

##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

제정 2003. 6. 13 조례 제455호  
개정 2005. 10. 5 조례 제623호(법무행정 처리 조례)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조제2호,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사업(도로공사 및 하천개수공장 등)의 원활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에 따른 보상업무를 보상전문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원활한 보상 업무 추진과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위탁”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보상 전문기관에게 그의 책임 하에 보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.
2. “보상전문기관”이라 함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으로서 한국토지공사, 대한주택공사,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도로공사, 농업기반공사, 한국감정원을 말한다.

**제3조(위탁대상업무)** 사업시행자가 보상에 관한 업무 중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탁을 의뢰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보상계획의 수립·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
2.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
3. 토지 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 관련사항의 조사
4. 토지조사 및 물건조사의 기재 사항에 관한 조사
5. 잔여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
6. 영업, 농업, 어업 및 광업손실에 관한 조사
7. 보상액의 산정(감정평가업무를 제외한다)
8. 보상협의,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
9. 보상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

## 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

### 10. 토지 등의 등기관련업무

### 11. 그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

제4조(용역수탁기관) ①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제3조 각 호의 업무에 대하여 용역을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6조제1항제8호다목 또는 아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에게 수의계약에 의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 <개정 2005. 10. 5>

② 용역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 받은 업무 중 직접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의 승낙을 얻어 전문용역기관에게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.

제5조(협약의 체결) ① 시장은 용역수탁기관과 위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.

② 협약서에는 위탁기관의 의무, 위탁내용, 수수료에 관한 사항 협약내역을 위반할 때의 의무이행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

제6조(감독) 시장은 용역위탁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감독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7조(성과품의 제출) ① 용역수탁기관은 용역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용역완료 보고서에 업무수행과 관련한 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 받은 때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4조 규정에 따라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8조(용역수수료) 보상업무의 용역위탁수수료는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제4항 및 「도로법 시행령」 제37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용역수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9조(기타) 보상업무의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시행자와 용역위탁 기관이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.

용인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

제10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3호, 법무행정 처리 조례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내지 제4조 생략